

공고내용

페이지 : 1/1

게재(요청)일자	2016-02-12	담당부서	기획예산과	황세윤
고시공고구분	공고(입법예고)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6-316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		
내용	<p>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등의 개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16.2.22.(월)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</p> <p>2.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. 2. 12. ~ 2016. 2. 22. (10일간)</p> <p>나. 입법예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</p> <p>다. 공고방법 : 강남구 홈페이지, 동주민센터 홈페이지, 강남구 구보 공고</p>			